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7조제1항제10호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시, 해당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선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구분하여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친선도시 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세부적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은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결연취소 대상에 우호협력협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